#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29

발의연월일: 2020. 11. 4.

발 의 자:조승래・김민기・김병기

김홍걸 · 남인순 · 박영순

양정숙・유정주・이용빈

이원욱 · 이정문 의원

(119]

###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사업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보공개 방식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의 지역주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

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 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 록 함(안 제6조).
- 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군·

구 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와 원자력·보건의료·공공안전 등의 분야에서 전 문성을 가진 사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폐기와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 방사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사업자"라하다)
  -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 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 단
  - 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
- 3. "공개"란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원자력 안전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다.
- 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

- 고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보유·관리
  - 2. 원자력안전정보의 연계·가공·분석
  -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제공
  - 4.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지원 및 국내외 협력

- 5.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정보공유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 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 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 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
  - 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 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라.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분석 등) ① 원자력안전 위원회(제1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연계·가공·분석할 수 있다.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개인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 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

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 · 운영을 통한 공개
- 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
-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 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 2.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3.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 치
- 4.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
-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 3.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
-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 ·구"라 한다) 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원자력·보건의료·공공안전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 그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 전정보의 제공 및 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한다.
- ④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권한은 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정보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 1.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분석
  - 2.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공유센터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정보공유센터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자는 원자력안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아닌 자는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자
  - 2. 제16조를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원자력안전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을 위하여 기술적·관 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제20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적용한다.